

연안지역 경관관리를 위한 정책적 제언

이주아* · 이훈**

*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양정책연구소 선임연구원, ** 신한대학교 도시기반학과 조교수

Policy Implication for Landscape Administration of Costal Areas

Jooah Lee* · Hoon Lee**

* Korea Institute of Ocean Science & Technology, ** Shinhan University

핵심용어 : 연안지역, 경관관리, 해양정책, 지역특성, 관리수단

Key Words : Coastal Area, Landscape Administration, Marine Policy, Regional Characteristics, Means for Administration

01 연구의 배경 및 목적	02 연구의 주요내용
<p>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</p> <p>▶ 연안의 항만도로변 일부지역 난개발 → 해안 도시미관훼손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- 경기도 내 유일한 항만인 푸른항이 조성됨에 따라 항만도로변 일부지역에서 난개발에 의한 도시미관훼손이 나타나고 있음- 공유수면 매립지역 및 주변지역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힘의적인 도시관리계획(지역/지구/구역 등) 수립방안 등의 필요성 제기 <p>연구의 목적</p> <p>▶ 연안지역 복잡방향에 부합하는 항만도로 인접지역 등 경관 보존방안 수립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→ 항만을 포함한 연안지역 해안도시의 이미지 제고 기여- 공유수면 매립지역 등 연안 내 개발계획에 부합하는 항만도로변 및 주변지역 요구기능 도출- 연안지역 경관보존을 위한 건축률 높이 및 형태 등 관리방안 검토- 이를 실현하기 위한 법·제도적 관리방안 마련 제안	<p>기준 법·제도 적용가능성 검토</p> <p>▶ 개발행위허가제도의 활용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- 개발행위 허가제도는 기본시설이 갖추어진 계획관리 지역의 개발을 억제할 수 없음 <p>▶ 용도지역의 지정 관리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- 현재 계획관리지역의 용도제한 사항은 연적규모 제한은 있지만 난개발이라고 할 수 있는 용도의 대부분을 포함하는 실정으로, 난개발 억제가 어려움 <p>▶ 항만시설 보호지구 지정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- 항만시설 보호지구는 국토법에 의한 용도지역구제의 용도지구인 시설보호지구(학교시설, 공공시설, 항만시설, 공항시설)의 하위 위계의 용도지구- 항만시설 보호지구 내에서의 허용용도가 험범위하지만 난개발의 온상인 주택개발, 공장, 음식점 건축 등은 불가능하므로 난개발 양상은 어느 정도 제어 가능함- 단, 난개발이 우려되는 계획관리지역의 토지가 국공유지 비율이 낮고 사유지의 비율이 높을 경우 지구지정 신주인 반발이 예상됨

* First Author : jalee@kiost.ac.kr

** Corresponding Author : hlee@shinhan.ac.kr